

출장복명서

## 제5차 한·일 민간투자협력회의

2010. 10. 21~2010. 10. 23

한국개발연구원

## 【목 차】

I. 회의의 목적	1
II. 일시 및 장소	1
III. 참석대상	2
1. 한국	2
2. 일본	2
IV. 주요 일정	3
V. 발표 및 토론 내용	4

## I. 회의의 목적

- 한·일간 민간투자제도 및 사업추진 경험 공유 및 양국의 민간투자제도 보완과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연례협의
  - 2006년 5월 양국간 민자협력 MOU 체결에 따라 국장급 협력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매년 1회씩 한국 또는 일본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제1차(2006. 7)와 제3차(2008. 10)는 동경에서 제2차(2007. 11)와 제4차(2009. 10)는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음.

## II.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0. 10. 21(목) ~ 2010. 10. 23(토) 2박 3일간
- 장소:
  - 일본 동경 내각부 내 회의실 등

### Ⅲ. 참석대상

□ 한국:

- 기획재정부(단장: 김상규 경제예산심의관), KDI PIMAC,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환경부

□ 일본:

- 내각부(단장: 고바시 마사아키 PFI추진실 심의관),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방위성, 후생성

**[표] 한·일 양국 참석자 명단**

한 국			일 본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상규	내각부	PFI 추진실 실장	고바시 마사아키
	민간투자정책과장	한 훈		PFI 추진실 참사관	우에다 요헤이
	민자사업관리팀 팀장	이형철		PFI 추진실 참사관 보좌	무토 히데키
	민간투자정책과 서기관	박성훈		PFI 추진실 주사	나수 다이수케
	민간투자정책과 행정주사	임정목	문부과학성	대신관방문교시설기획부 계획과 정비계획실 실장	후지이 타카시
KDI PIMAC	공공투자정책실 실장	김용성		대신관방문교시설기획부 계획과 정비계획실 실장 보좌	니시무라 후미히코
	민간투자지원실 BTL팀 팀장	김기수		대신관방문교시설기획부 시설조성과 과장보좌	스기우라 켄타로
	민간투자지원실 BTO팀 전문위원	노승범	후생노동성	건강국 수도과 수도계획 지도실 실장보좌	나카타 코우스케
교과부	교육시설 담당관실 서기관	노창균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정책과 과장 보좌	나카타 히토시
	에듀맥 소장	유용상		도시/지역정비국 하수도부 하수도정비과 기획전문관	이시 히로유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 과장	모규연	방위성	경리장비국 시설정비과 전문관	사이토 마코토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관	박봉형			
	민간투자관리과 행정주사	이미현			
환경부	생활하수관 행정사무관	조석훈			
	한국환경공단 민자지원팀장	문균식			
국토부	투자심사팀 팀장	김재철			
	투자심사팀 행정사무관	김남규			

## IV. 주요 일정

일 시	내 용
2010. 10. 2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김포 공하 → 하네다 공항)</li> <li>• 하네다 공항 국제선 신청사 시찰</li> <li>• 진구마에 민활재생프로젝트 시설 시찰(시부야 위치)</li> </ul>
2010. 10. 2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내각부)</li> <li>• 양국의 민간투자정책 관련 발표 및 토론 (기획재정부, KDI PIMAC, 일본 내각부)</li> <li>• 양국의 사례/이슈 발표 및 토론(양국의 실무부처)</li> <li>• 심층토론(Concession/관리 운영 등)</li> <li>• 리셉션</li> </ul>
2010. 10. 2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하네다 공항 → 김포 공항)</li> </ul>

## V. 발표 및 토론 내용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발표(김용성)
  - 관리운영건의 의의, 등록, 법률관계, 사용료 징수결정 과정 및 실무상 쟁점에 대하여 발표(별첨자료 참조)
- 일본 측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응답함.
  - 물권으로서 관리운영권을 도입하여야 하는 이유?
    - 사업시행자는 시설준공 후 기부채납으로 소유권(물권)이 정부로 이전됨에 따라 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대응의 개념으로서 동등한 물권적 성격의 관리운영권을 부여
  - 관리운영권과 시설사용료와의 관계는?
    - 관리운영권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사업시행자와 정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임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다하더라도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님.
  - 관리운영권의 분할에 있어 분할된 관리운영권의 행사여부와 분할된 관리운영권과 실시협약에서의 권리·의무 관계는?
    - 부산 신항만의 경우에서와 같이 분할된 관리운영권도 실제 행사될 수 있으며, 다만 관리운영권을 분할 매수한 당사자는 실시협약의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는 제한되는 것으로 봄.
- 일본 측은 향후 관련 법률 개정시 관리운영권 세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표시함.